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156 / 전송(02)731-6562
 처리부서:법무담당관(시청본관 3층)/ 법무담당관 박돌봉 법제담당사무관 구본상 담당 운영권

문서번호 법무 11010-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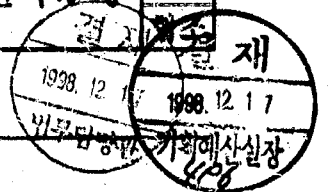
시행일자 1998. 12. 17 ()년

(정유) (제1안)

수신 내부 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년	
기획예산실	전 결	홍영준 1
법무담당관	박돌봉	
기안	홍영준	◎법제담당사무관 구본상



제목 공무원증규정중개정규정 발령

1. 서울특별시공무원증규정중개정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 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가. 발령예정일 : '98. 12. 21.(월)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897호

훈령제 897 호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2안)

수신 : 홍보담당관

제목 : 시보 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공무원증규정중개정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 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98. 12. 21.(월)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897호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2부. 끝.

법 무 담 당 관

(제3안)

수신 : 인사행정과장

제목 : 훈령 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공무원증규정중개정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98. 12. 21.(월)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89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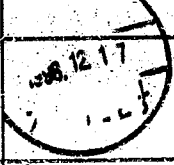
첨부 : 발령목록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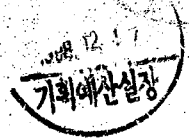
훈령 발령 목록

총 1 건 (개정)

연 번	법 규 명	번 호	주 관 부 서
1	서울특별시공무원중규정중개정규정	제897호	인사행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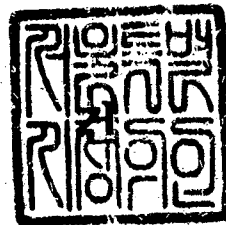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공무원증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8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고



서울특별시공무원증규정중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의 개정('98.11.19)에 맞도록
우리시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중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무원증 뒷면의 기재사항란에 성명란을 추가함(안 별표)

기억에산실장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공무원증규칙중개정령(행정자치부령 제17호, '98.11.19)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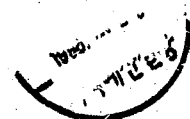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규정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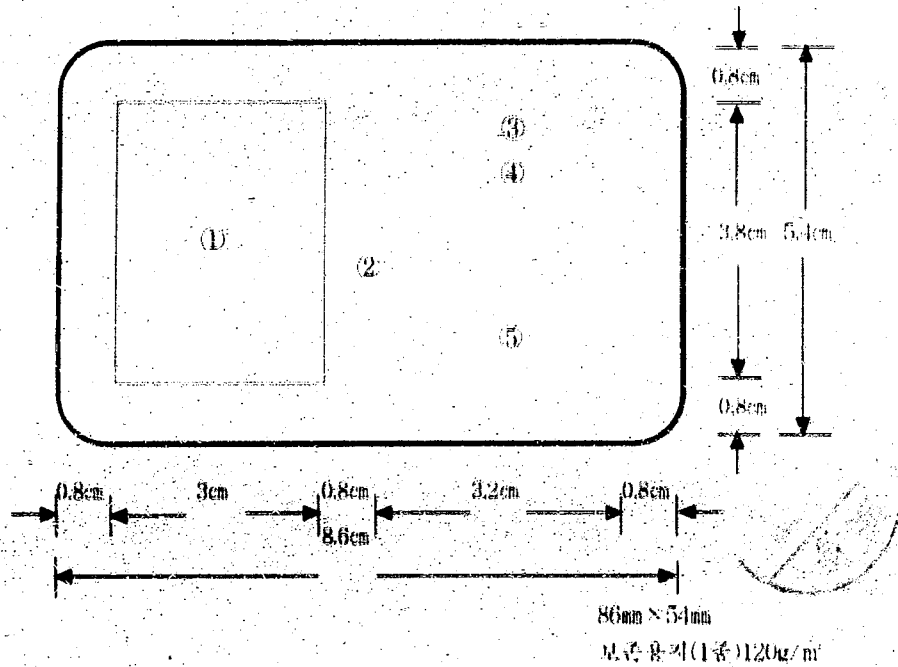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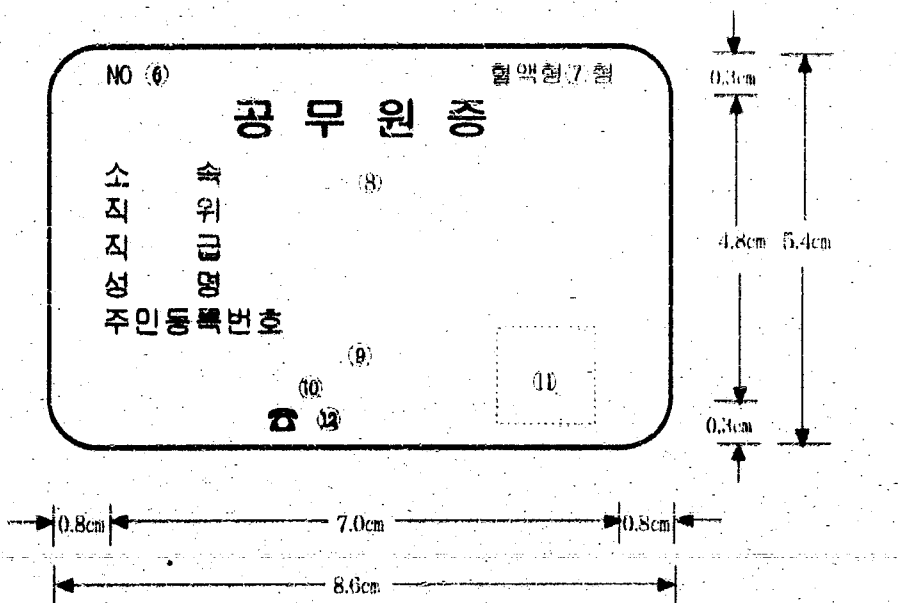


규격 · 제식 및 기재사항

(앞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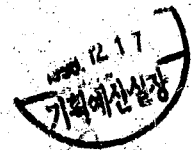


(뒷 면)



(주) 1. 위의 ① ② ③ 등의 밖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 ① 사 진 : 3×4cm
- ② 촬 인 : 직경 2cm (발급기관명 각인)
- ③ 한글성명
- ④ 영문성명 : 이름은 처음 활자만 표기 (예 : HONG, G. D.)
- ⑤ 자치단체명(서울특별시)
- ⑥ 발급번호
- ⑦ 혈액형
- ⑧ 소속기관명
- ⑨ 발급일자
- ⑩ 발급기관장의 명의(서울특별시장)
- ⑪ 발급기관장의 직인
- ⑫ 발급부서의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2. 글자의 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글 자 크 기	글 자 종 류
한글성명	24 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영문성명	10 포인트	선명 태고딕체(진하게)
자치단체명	18 포인트	굴림체(진하게)
발급번호, 혈액형	10 포인트	굴림체(진하게)
공무원증	18 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소속, 직위, 직급, 성명	12 포인트	굴림체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장의 명의	12 포인트	굴림체(진하게)
발급부서의 전화번호	10 포인트	궁서체

3.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m²으로 한다.
4. 공무원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5. 공무원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코리로 매달게 하거나 벽에 걸 수 있도록 한다.

기획예산실장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021 / 전송 731-6053
 인사행정과(시정분관4층) 과장 국윤호, 사무관 유희태, 담당 오승주

문서번호 인사 12140-2922

시행일자 1998. 12. 11.

수신 법무담당관

참조

서울특별시공무원증				
집	일자	1998. 12. 12.	지시	
	시간	:	결재	기보영
수	번호	392	공	한관
치	리	과	람	이상현
담	당	자		이정민

제목 : 서울특별시공무원증규정중개정규정안 발령의뢰

1. 행정자치부 복무 12140 - 298 ('98.11.21)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증의 위조·변조의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공무원증규정을 개정 시행코자 하오니 동규정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규정명 : 서울특별시공무원증규정 (훈령)

나. 개정내용 : 공무원증 뒷쪽의 기재사항에 성명란 추가

붙임 : 서울특별시공무원증규정중개정규정안 1 부. 끝

인사행정과장

To: 윤형진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621 / 팩스 731-6653
인사행정부(분관4층) 과장 국유호, 사무실 유형배, 담당 오승주

문서번호 인사 12140-282

시행일자 1998. 12. 11

(제 1 안)

수신 내부각과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개 송 각	
행정위이상 전 설		
인사행위이상 국유호 임무담당관 심사필		
기위	유승주	유형배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증규정 개정

1. 행정자치부 부령 12140 - 288 (1998.11.21)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증의 위조·변조의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증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가. 개정규정명 : 서울특별시 공무원증규정 (훈령)
- 나. 개정근거 : 공무원증규칙개정령(행정자치부령 제17호, 1998.11.19)
- 다. 개정내용 : 공무원증 뒷쪽의 기재사항에 성명란 추가

붙임 : 서울특별시 공무원증규정중개정규정안 1 부 끝

(제 2 안)

수신 : 임무담당관

제목 : 서울특별시 공무원증규정중개정규정안 발령의뢰

1. 행정자치부 부령 12140 - 288 (1998.11.21)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증의 위조·변조의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증규정을 개정 시행토록 하오니 발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증규정중개정규정안

제정일자	1998.11.19	제정처	서울특별시
제정장	서울특별시공무원증규정	제정담당	공무원증
김광영	이정범	박동봉	

1. 개정이유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의 개선('98.11.19)에 및 도별
우리시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중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무원증 뒷면의 기재사항란에 성명란을 추가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공무원증규칙중개정령(행정자치부령 제17호, '98.11.19)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